

## 임금피크제시행세칙

제정 2016.12.29  
개정 2018.09.17  
개정 2020.08.25  
개정 2021.02.17  
개정 2025.03.17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 취업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69조의2 및 제70조에 의거하여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3.17.>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임금피크제’ 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.
2. ‘기준급여’ 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기본급과 전년도 근무평정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(임금피크제 적용년도) 인정되는 기본급 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3. ‘지급급여’ 라 함은 기준급여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로 적용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

**제3조(대상)** 이 세칙은 정년이 만60세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단,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5.>

**제4조(선정 및 적용기준일)** ① 재단은 매년 1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②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경우, 정년퇴직일 3년 전인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, 정년퇴직일 3년 전인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③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기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5조(임금조정기간)**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전 3년(36개월)으로 한다.

### 제2장 인사관리

**제6조(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급)** 재단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급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에서 하향 조정할 수 없다. <개정 2021.2.17.>

**제7조(근무평정 등)** ① 재단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근무평정을 동일하게 실시한다.

②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되면,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감액률을 적용한다.

### 제3장 보수

**제8조(임금피크 지급급여)** 임금피크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감액률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감액율 - 1년 차:기준급여의 5%, 2년 차:기준급여의 10%, 3년 차:기준급여의 15% <개정 2018.9.17.>
2. 적용기간 : 정년퇴직일 기준 3년 전부터 정년퇴직일까지

**제9조(연봉계약 체결)** 재단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조정기간(임금피크제 기준일) 별로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.

### 제4장 퇴직금

**제10조(퇴직금 중간정산)**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다.

**제11조(기타)**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18.9.17.)

이 세칙은 201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20.8.25.)

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21.2.17.)

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(2025.3.17.)

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